

서울특별시

우 100-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번지 / 전화 (02) 731-6156 / 전송 731-6562

분서번호 법무 02124-1118

시행일자 1992. 07. 15

수신 수신처참조

선결	과장 추	지	
시		시	
접	일자 시간 92. 7. 16	결	행정계장
수	번호 1387	재	교육계장
처리과		공	보육계장
담당자	주인리	합	

제목 자치구 조례·규정등 보고 준수

1. 법무 02124-1084(91. 7. 8)호 및 법무02124-1798(91. 12. 6)호에 관련된
2. 지방자치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자치구조례·규칙중 내부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을 "시·군 및 자치구의 조례·규칙 보고규정" (내무부 훈령 제1027호, 91. 7. 8 자 관련대호)으로 시달하였으나, 주관과의 내부부보고 시한준수와 보고과정에있어 소관 중앙부서와 우리시간 발매사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지방자치법규정에 의한 보고사항을 다음과 같이 재강조 지시하니 시행에 차질없기 바랍.

가. 자치구 조례·규칙 내부부 보고

- 근거 : 지방자치법제21조및내무부훈령 제1027호
- 구분 조례 : 특별회개설치조례의 11항목(별첨)
- 규칙 : 직제 및 정원규칙의 4항목(별첨)
- 시한 : 접수일 날로부터 2일 이내
- 보고 : 주관과장 → 내부부장관

나. 자치구 명명·처분의 취소·정지 사항보고

- 근거 : 지방자치법 제157조, 동법시행령 제55조
- 대상 : 자치구 사무에 관한 구청장의 명명, 처분에 대하여 시장이 취소하거나 정지하고 그 조치결과를 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
- 보고 : 분청주관과장 → 내부부장관

다. 재외와 재소사항 내무부 보고

· 근거 : 지방자치법 제157조및제159조 등법시행령 제55조및제56조

· 대상

- 재외 : 법령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치구의길에 관한 재외요구사항(법제159조)

- 재소

자치구사무에 관한 구청장의 명령·처분에 대하여 시장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자치구청장의 대법원 소제기 보고사항(법제157조)

자치구의회 의 재외결 사안에 대한 자치구청장의 대법원 소제기 보고사항및대법원 판결내용 보고사항(법제159조)

· 보고 : 주관과장 → 내무부장관

첨부 : 내무부 훈령 1부. 끝.

서울특별시

수신처 서과171.

“기획관리실감서절”

시·군 및 자치구의 조례·규칙 보고규정을 이에 발령한다.

1991. 7. 2.

내무부장관 이 상 언

시·군 및 자치구의 조례·규칙 보고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·군 및 자치구의 조례·규칙중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사항과 통업부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보고대상) 서울특별시·직할시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가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(이하 "시장·군수"라 한다)으로부터 받은 보고중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할 조례·규칙(개정·폐지를 포함한다)은 별표와 같다.

제3조(보고시기 및 내용) 시·도지사가 시장·군수로부터 받은 보고중 제2조 별표에서 정한 조례·규칙은 접수후 2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조례 또는 규칙전문 2부.
2. 제정(개정) 이유 및 주요골자 1부.
3. 관련법령 발췌서 1부.
4. 신규조문대비표(개정시) 1부.
5. 기타 참고사항 1부.

제4조(심사등) ① 제3조의 보고에 대하여는 소관 실과장이 이를 심사한다.

② 제1항의 심사결과 시·군 및 자치구의 조례·규칙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는 당해 시·도지사로부터 하위급 재외를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을 명하도록 하여야 한다.

- 5조(시정조치등) ① 내부부장관으로부터 재의 또는 시정명령 요구를 받은 시·도지사는 당해 시장·군수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하거나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재의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시장·군수는 지체없이 당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의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시장·군수가 시·도지사를 거쳐 내부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 서울특별시·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구성일부터 시행한다.

(별 표)

내무부장관 지정 시·군 및 자치구 조례·규칙 보고사항

구분	보 고 사 항	소관부서	비 고
조례	1. 의회사무기구와사무직원의정수등에 관한조례 2. 직속기관, 사업소, 출장소 설치조례 3. 봉장정수조례 4. 특별회계설치조례 5. 공유재산관리조례 6. 지방채발행조례 7. 물품관리조례 8. 보충채무관리조례 9. 기금설치조례 10. 상수도급수조례 11. 상수도사업설치조례 12. 시·군·구세조례	지방기획과 " " " 재 정 과 " " " " " 공기업과 " 세 계 과	
규칙	1. 직제 및 정원규칙 2. 지방채발행조례시행규칙 3.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 4. 지방공기업회계규칙 5. 시·군·구세부과장수규칙	지방기획과 재 정 과 " 공기업과 세 계 과	